

# 원광고 청운학사 운영 규정

제정 : 1998.03.09.

개정 : 2014.03.01.

개정 : 2017.07.01.

개정 : 2018.03.01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, 공동생활을 통해 협동심이 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원광고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### 제 2 조 (명칭)

본 기숙사는 원광고청운학사라 칭한다. 이하 기숙사라 약칭한다.

### 제 3 조 (운영)

기숙사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 4 조 (운영기간)

기숙사의 운영기간은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, 방학기간 등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연장 또는 단축한다.

### 제 5 조 (이용제한)

기숙사의 모든 시설은 기숙사생과 관리요원에 한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숙사생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학생과 교직원도 이용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조 직

### 제 6 조 (운영위원회)

- 1) 기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(이하 운영위원회)를 둔다.

2) 기숙사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0명으로 구성한다.

- 위원장 : 교장
- 부위원장 : 교감
- 재정담당관 : 행정실장
- 위원 : 학부모 위원 6명, 총사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 7 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

1. 기숙사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- 1)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
- 2) 기숙사 운영 예산 및 결산심의
- 3)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
- 4) 면학 분위기 조성 대책
- 5) 생활 수칙 및 일과표 제정
- 6) 기타

2. 기숙사학생자치회(이하 “자치회”)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### 제 8 조 (운영위원회 소집)

기숙사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로 3일전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9 조 (기숙사 사감)

1) 기숙사 운영을 위해 총사감 및 약간 명의 사감을 두며, 학교장이 임명한다.

2) 총사감 및 사감은 다음 사항을 관장토록 한다.

- 면학 분위기 조성
- 생활 지도 및 안전지도
- 보건 위생 지도
- 외출, 외박 및 기숙사생 통제
- 입사, 퇴사에 관한 일
-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

### 제 10 조 (외출 및 외박)

1) 외출은 보호자의 허락(연락)이 있을 경우 총 사감 또는 사감의 허가를 받은 후에 행한다.

2) 외박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특별한 사유로 보호자의 허락(연락)이 있을 경우 총사감 또는 사감의 허가를 받은 후에 행한다.

## 제 3 장 입 사 및 퇴 사

### 제 1 절 입 사

#### 제 11 조 (입사자격)

기숙사 입사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, 건강한 학생으로 결정한다.

## 제 12 조 (입사절차)

총사감은 정해진 입사 시기(3월)가 되기 전에 학년별 결원을 파악하고 보충 예정 인원을 홍보하여야 하며,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- 1) 기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과 보호자 연서로 된 입사 지원서를 총사감에게 제출한다.
- 2) 입사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.
- 3) 입사 학생은 소정의 생활 안내 교육을 받고 숙소 및 열람실 좌석을 배정 받는다.
- 4) 입사자는 입사 시에 생활규정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.

## 제 13 조 (입사자 선정)

- 1) 총사감은 제 11조, 12조 규정에 의거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자 중 신입생은 약속장학생 또는 입학 종합성적, 재학생은 정기고사와 학력평가(모의고사) 성적에 의한 서열부를 작성하고,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사정하여 선정한다.
- 2)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업성적을 고려하여 1)항에 의거 입사생을 선정한다.
- 3) 수능이후에는 1, 2학년을 대상으로 성적서열부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동안 가입 시킬 수 있다.
- 4)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(통학불편자)에 해당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의 확인과 보호자 연서로 된 우선선발지원신청서 양식을 제출하도록 하며, 13조 1)에 의거 정원의 20%를 우선선발한다.
  - 가)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범위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또는 그 자녀,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68%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그 자녀.
  - 나) 원거리통학자(통학불편자)의 선발범위
    - 운영위원회가 신청자의 통학시간과 거리, 불편사유 등을 고려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선발한다.
  - 다) 기숙사 정원의 20%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발한 인원을 차감한 만큼 원거리 통학자를 선발한다.
  - 라) 신청인원이 20%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을 일반모집으로 대체한다.
- 5) 학생선수 중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의 입사를 차우선선발 한다.

## 제 2 절 퇴 사

### 제 14 조 (퇴사)

- 1)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자진 퇴사와 기숙사 규정에 의한 강제 퇴사로 구분 한다.

- 2) 자진 퇴사는 학생이 희망할 때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.
- 3) 강제 퇴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  - ① 학업성적이 현저히 떨어진 자.
  - ② 기숙사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70점 이상 초과한 자.
  - ③ 감염되는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.
  - ④ 학생 선도규정에 의거 사회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.
  - ⑤ 폭력행사, 집단폭행, 음주, 흡연, 금품 절취 또는 갈취, 불량 동아리 조직 및 활동, 도박(카드, 화투, 기타), 유흥장 출입 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.
  - ⑥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사감이 인정하는 자.
  - ⑦ 기숙사 납부금 미납자.

### 제15 조 (퇴사 절차)

기숙사를 퇴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- 1) 보호자가 총사감과 상담한 후 퇴사원을 총사감에게 제출한다.
- 2) 총사감은 퇴사원을 접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.
- 3) 총사감은 퇴사가 확정된 학생에게 관리비를 정산하게 하고, 담임교사와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.
- 4) 퇴사는 매월 말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 16 조 (퇴사자의 재입사)

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각 조항의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재입사 할 수 있다.

- 1) 6개월 경과 후 재입사 가능자 : 성적저하로 인한 퇴사자, 부적응 및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한자
- 2) 1년경과 후 재입사 가능자 : 벌점누적에 의한 강제퇴사자

## 제 4 장 재 정

### 제 17 조 (재정운영)

기숙사 재정운영은 원광고등학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·운영한다.

### 제 18 조 (예·결산)

기숙사의 예·결산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운영한다.

### 제 19 조 (기숙사비)

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3조의 규정과 같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납부하도록 한다.

- 1) 기숙사생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입사비 및 관리비와 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2)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중에 퇴사한 경우, 관리비는 월 단위로 정산하고 식비는 일수로 계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.
- 3) 학사일정에 의하여 사전에 허락된 정당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결석한 경우는 식비를 조정할 수 있다.
- 4) 기타 기숙사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 할 수 있다.

## 제 20 조 (예산 집행)

기숙사의 모든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행정실에서 집행하며, 총사감 및 사감 등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한 후 집행한다.

# 제 5 장 사감 등의 업무

## 제 21 조 (위생 점검)

사감은 기숙사내의 각 호실, 집기, 화장실, 복도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과 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, 소독 및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.

## 제 22 조 (시설물 점검)

사감은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며, 보수사항이 생길경우 행정실에 요구한다.

## 제 23 조 (사감의 업무)

사감은 다음 각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1) 사감의 근무 시간은 원광고 운영 시간표에 의하여 행한다.

### 가. 총사감 근무시간

- ① 월~금요일 19:30~익일 08:00 (수면-4시간30분, 01:30~06:00)
- ② 토요일 12:00~익일 12:00 (수면-5시간, 01:00~06:00)

### 나. 사감 근무시간

- ① 월~금요일 20:30~익일 08:30 (수면-5시간, 01:00~06:00)
- ② 토요일 가) 08:30~12:00  
나) 08:30~익일 08:30 (수면-5시간, 01:00~06:00)
- ③ 일요일 가) 20:00~익일 08:30 (수면-5시간, 01:00~06:00)  
나) 08:30~익일 08:30 (수면-5시간, 01:00~06:00)
- ④ 공휴일 08:30~익일 08:30 (수면-5시간, 01:00~06:00)

※ 교대를 할 때와 학사일정 변동이 생길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 할 수 있다.

- 2)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.
- 3)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지도한다.
- 4) 시설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일지에 기록하고 조치한다.
- 5)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.
- 6) 점호시간을 설정하여 건강지도, 생활지도, 청소 지도, 생활 예절 및 기숙사비 납부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도를 한다.

## 제 6 장 생활 수칙

### 제 24 조 (생활 지침)

기숙사 입사생의 생활 지침은 다음과 같다 (원광고 기숙사 생활수칙 별첨규정)

- 1) 기숙사를 내 집같이, 각 호실을 내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.
- 2)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.
- 3) 기숙사 생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따로 시행 세칙을 정하고, 별첨 규정에 의해 기숙사생의 생활 태도를 엄밀히 점검하여 기록한다.

## 제 7 장 학교장의 책무

### 제 25 조(학교장의 책무)

- 1)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권 및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 2) 학교장은 기숙사에서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·운영하는 등 경쟁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거나 학업성적 차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 3)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·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자치회의 심의를 거친 규범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한다.
- 4) 학교장은 학생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며, 보건 위생을 위한 청소·청결지도와 안전·재난 사고예방 사전교육 및 시설점검을 실시한다.
- 5)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정·집행한다.

## 제 8 장 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

### 제 26 조 (학생자치회의 구성)

- 1)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기숙사생활을 위하여 학생대표 7명을 선발하여 자치회

를 구성한다.

- 2) 학생대표선발은 전년도 대표학생들의 추대로 2학년 7명을 선발하며, 임기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년도 4월까지로 한다.

### 제 27 조 (학생자치회의 운영과 역할)

- 1) 대표학생들은 학생들의 생활규정 준수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계도 및 지도에 노력하며, 벌점 부여를 사감에게 건의할 수 있다.
- 2) 기숙사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사감 및 운영위원회에 제시한다.
- 3) 총사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내용을 필요시 대표학생들에게 전달한다.
- 4) 자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) 자치회 회칙 제정·개정	나) 기숙사 생활 수칙 및 환경 개선
다)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	라) 기타 자치회 운영
- 5) 자치회에서 심의·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(시행) 본 규정은 199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광고등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위원장의 결재가 있으면 본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.

## 부 칙

제 1 조(시행) 2014년 2월 의결된 본 개정안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(시행)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(시행) 2018년 1월 26일 의결된 본 개정안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